

	<h2 style="margin: 0;">기술창업지원센터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4-0-10
			제정일자	2015.09.01
	개정일자			
	개정번호	Ver .0	총페이지	2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기술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사업)** 센터는 캠퍼스 CEO 육성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립하고 산업계 수요 및 현장 기술 중심의 창업교육 발전을 지향하기 위하여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캠퍼스 CEO 육성 사업방향 수립
2. 캠퍼스 CEO 육성을 위한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
3. 캠퍼스 CEO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
4. 캠퍼스 CEO 육성 관련 세미나 및 학술활동 지원
5. 창업교육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
6. 기타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**제3조(소재)** 센터는 본 대학에 둔다.

### 제 2 장 조 직

**제4조(구성)** 센터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.

1. 센터장
2. 직원 및 연구원

**제5조(센터장)**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와 관련된 업무전반을 총괄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6조(직원 및 연구원)** 센터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원 및 연구원을 둔다.

### 제 3 장 위 원 회

**제7조(위원회)** 센터에서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

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와 센터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
**제8조(구성과 임기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임교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,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맡는다.

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위원장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.

⑤ 자문위원회는 센터장이 3인 이내로 선임하며, 자문위원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

**제9조(직무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및 출석위원의 확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.

1. 회의일시, 장소 및 출석위원의 날인
2. 회의내용 및 의결사항

**제10조(위원회 임무)** 위원회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칙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11조(자문위원회 임무)** 자문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문
2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자문

**제12조(회의)**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을 맡는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의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13조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의 개정은 제10조 3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.

## 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2)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진행된 회의나 기타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심의한 것으로 본다.